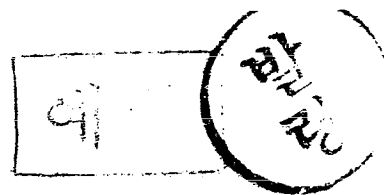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대정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-8 / 전송 731-6562

문서번호 법부 11010-257

시행일자 1994. 2. 18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위급		시	장
보존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무담당관			
법제계장			
기안	이충범	협조	

제목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공로연수실시지침발령

1.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공로연수실시지침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 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예규안 1부. 끝.

예규제 585 호

(제 2 안)

수신 공보판

참조 공보담당관

제목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공로연수실시지침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.

첨부 : 서울특별시예규 제585호 2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 3 안)

수신 인사과장

제목 예규발령 통보

1. 인사12100-344(94.2.15)호와 관련임.

2.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공로연수실시지침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.

첨부 : 서울특별시예규 제585호(첨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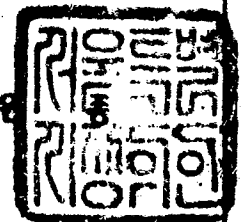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공무원수집시험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 94 년 2 월 2 일

서울특별시 장 9



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공로연수실시지침

1. 제정사유

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퇴직예정자들의 공로연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, 퇴직후 사회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연수활동에 기여코저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개인 및 합동연수내용 (안 제4조 및 제5조)

나. 연수활동에 필요한 지원범위 (안 제7조)

다. 연수편의제공 및 퇴임식 개최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공무원임용령, 지방공무원임용령

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공로연수실시지침

제1조(목적) 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로연수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하므로서 퇴직후 사회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연수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수대상) ①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의 경력직(일반직·지도직·연구직 및 기능직)공무원중 정년잔여기간 1년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 정년잔여 3월이내의 자는 공로휴가 처리한다.
②정년잔여기간이 6월이상 1년이내의 공무원은 본인의 공로연수 희망원 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 또는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

제3조(연수방법) ①연수구분은 개인별연수와 합동연수 방법에 의하되, 여행과 휴식등의 개별활동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연수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및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개인별연수) ①개인별연수는 대상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다음각호의 활동이 연수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.

1. 국내외 시찰
2. 건강 및 취미생활을 위한 시립시설이용 편의 제공
3. 사회적응을 위한 민간연수기관의 특별연수 참여
4. 여행·휴식·회고록 작성 등 개인활동 기회부여

제5조(합동연수) ①합동연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연수일정 및 과정에 의하여 실시한다.

②합동연수내용에는 연금제도·건강생활·취업정보 등 퇴직후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.

③합동연수참여는 연수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참여가 불가능할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.

제6조(연수계획수립) ①연수계획은 6월단위로 년2회 1월 1일 및 7월 1일기준 수립 시행한다.

②공로연수 주관부서는 공로연수 실시 1월전에 연수대상공무원에게 알려 참여여부를 파악하여 차기 연수계획 수립시 연수일정, 예산조치 등에 차질없도록 한다.

제7조(연수활동지원) ①연수기간중 지원되는 연수활동비 지원

기준은 법정급여 및 제수당 등의 필수경비와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근속위로경비로 구분 지원한다.

②법정급여 및 제수당의 필수경비는 다음각호와 같다.

1. 해당직급의 보수전액 및 복리후생비
2. 차량유지관리비 (공로연수파견시점의 기수급자에 한함)
3. 연수활동비 (공로연수파견시점의 업무추진비 상당액)
4. 기타 연수기간중 법규 개정으로 신설 또는 조정되는 보수액을 반영한다.

③근속위로경비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소요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2호와 3호의 연수활동에는 부부동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.

1. 종합건강진단비
2. 국내 산업시찰 또는 문화유적지 시찰비용
3. 국외연수 경비
4. 사회적응대비 대학부설 또는 민간연수기관 위탁연수비, 교재비 등 소요실비

제8조(연수편의제공 및 퇴임식 등) ①공로연수기간중 연수대상자의 요청이 있을경우 연수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연수실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공로연수 종료시 퇴임식 등을 거행하여 퇴임자로 하여금 영예로운 퇴진이 되도록 배려한다.

제9조(연수계획집행) 이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연도 업무, 예산형편상 지침을 조정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, 중요내용의 변경을 요할 경우는 별도 시장의 방침을 받아 조정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이 지침 시행전 공로연수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고, 제6조의 연수활동 지원 사항중 지출되지 아니한 필수경비는 199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